

2021-65
신입가정 활성화반
2021.04.16

서울동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21타채17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채병엽
 서울 중랑구 동일로 674, B102호 (면목동, 주영빌딩)

채 무 자 주식회사 다원이엔에스 (200111-0089875)
 서울 강동구 진향도로 161, 202호 (둔촌동)
 대표자 사내이사 박홍식

제 3 채 무 자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대표자 시장 오세훈

정본입니다.

2021.04.13

법원주사보 우성민



주 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청구금액

금 56,862,281원(청구채권내역은 별지기재와 같음)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차209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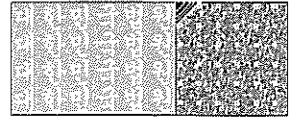
사법보좌관

최웅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 1.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참조).
2.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기 바랍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1항 참조).
3. 이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내에 이 법원에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법원조직법 제54조 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27조, 제229조 참조).
4.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참조).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 : 금56,862,281원

채무자 (법인등록번호 : 200111-0089875 , 사업자등록번호 : 410-81-46672)와 제3채무자 사이의 “서울시 금천구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설비)등”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중 위 금액.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서울동부지방법원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사 건 2021타채17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채병엽
 채 무 자 주식회사 다원이엔에스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1. 채권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진술최고신청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아래 표 중 '진술할 사항(제출할 거래정보내용)'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금융거래정보제출을 요구합니다.

아 래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식회사 다원이엔에스
		주민등록번호	(200111-0089875)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37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목적	위 사건의 절차 진행을 위하여	
진술할 사항 (제출할 거래정보 내용)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통보 유예	유예기간		
	유예사유		
특이사항	1.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 통보유예란은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021. 4. 13.

사법보좌관

최웅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0 5 8 5 6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대표자 시장 오세훈

A1 100 57 61
 동서울 서울중앙

제3채무자1

 0 4 5 2 4
 ↓
 2061012-577178
 (민사신청과 제 5 사법보좌관)
 2021-200-1727-837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채17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예정 기일 :

담당재판부 : 제 5 사법보좌관 법원주사보 우성민

직통 전화 : 02-2204-2440(결정)/(해제:2447) 팩 스 :

e-mail :

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송달과 확정내역 포함)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나의사건검색' 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